

치바현 특정 금속류 취급업의 규제에 관한 조례

2025년 1월 1일 시행

다발하는 금속 도난 방지와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가 시행됩니다.

규제 대상이 되는 특정 금속류의 매매 등에는 공안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조례의 규제 대상품이 될 수 있는 품목 (예)

전선



그레이팅



맨홀 뚜껑



깔개 철판



안전 발판



동판 건축 재료



※ 기타...

○핸드홀 뚜껑

○소화전 뚜껑

○방화수조 뚜껑

○안내판에 사용되는 판

○다리, 학교, 기타 시설명이 표시된 판

※사진은 지붕재

상기 금속류를 업으로 삼아 매매 및 교환 등 할 경우, 반드시 '특정 금속류' 혹은 '고물'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됩니다.

본래의 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폐제품
(절단, 파손된 제품)

특정 금속류 취급업의 허가



본래의 사용 목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물품

고물 영업의 허가

특정 금속류와 고물을 둘 다 취급할 경우, '특정 금속류 취급업', '고물 영업'의 두가지 허가가 필요합니다!

※치바현내에 영업소가 없는 현외 사업자 분도 현내에서 특정 금속류를 거래할 경우, 본조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미 특정 금속류의 매매 등을 하는 기존 업자 분도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30일까지의 경과 조치 기간이 있습니다.

●조례 위반자에게는 벌칙 (최고 징역 1년 이하) 나 행정 처분 (허가 취소, 영업 정지)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뒷면을 참조하세요.■□



치바현경찰



치바현경찰 마스크 캐릭터 '시쵸'



조례의 목적

도난 피해품 등의 유통 방지와 신속한 발견을 위해, 특정 금속류 취급업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규제를 하고 절도 등 범죄 방지와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허가 취득 규칙

허가의 취득

- 사업자마다 허가를 취득하십시오.
- 주로 행상으로 영업할 경우도 사업자마다 허가를 취득하십시오.

수수료

허가 신청 19,000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

- 조직폭력배 관계자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고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 파산 수속 개시 결정을 받고 복권을 얻지 못한 자 등

허가 업자【특정 금속류 취급업】의 준수 사항 등

본인 확인

- 특정 금속류를 매입할 때 거래 상대방에게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하는 등 본인 확인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거래 기록 작성 및 비치 등

- 특정 금속류를 거래했을 때는 그 기록을 작성하고 3년간 영업소에 보관하고 비치해야 합니다.

행상인증의 휴대

- 행상할 때는 행상인증을 휴대해야 합니다.
- 거래 상대가 요구하면 행상인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표지의 게시

- 영업소마다 잘 보이는 곳에 표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부정품의 신고

- 매입 등을 하고자 하는 특정 금속류가 부정품으로 의심될 때는 즉시 경찰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보관 명령

- 매입 등을 한 특정 금속류가 도난품으로 의심될 때는 경찰본부장 등의 보관 명령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도난품 등이 기재된 서면

- 경찰본부장 등이 발한 도난품 등이 기재된 서면(시나부레)을 6개월간 보관해야 합니다.
- 이 서면에 기재된 도난품 등을 소지하고 있었을 때는 즉시 경찰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의 신고

- 신청 내용에 변경이 있었을 때는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공안위원회에 의한 감독

보고 징수, 현장 검사

-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등 제출을 요구할 경우가 있습니다.
- 필요하면 경찰 직원이 영업소 등에 가서, 현장 검사를 합니다.

지시, 영업 정지 등

- 이 조례 등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지시, 영업 정지, 허가 취소 등의 행정 처분 대상이 됩니다.

금지 사항

- 무허가 영업의 금지
- 명의 대여의 금지 등

벌칙

악질적인 위반자에게는 벌칙이 있습니다.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100만엔 이하의 벌금)

【치바현경찰 홈페이지】

▶ 오른쪽 QR코드 스캔

본조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게재돼 있습니다!!



千葉県特定金属類取扱業の規制に関する条例

検索

문의처

치바현경찰본부 풍속보안과
가장 가까운 경찰서